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 처분 알림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분 알림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1. 6. 18.

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알림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, 제29조제1항제6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, 제26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 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처분 사유	처분 내용		
1	김O주	99.09.15.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알림	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친 출석통지에도 응하지 않아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 지원 종료 처분(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한 내 의견 제출 없음)	○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리 ○ 처분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 제도 재참여 제한 －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포함	폐문부재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(이하 생략)

4. 공고기간: 2021.6.18. ~ 2021.7.02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이민혜(Tel. 02-3468-4738)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